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75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박수영 · 서천호 · 최은석
김재섭 · 이종배 · 박성훈
송언석 · 윤영석 · 서일준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제조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공기 부분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국가에서 생산·유통되므로 대표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산업에 해당함.

한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정부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MRO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특성상 항공기 정비·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의 원활한 수급 및 원가 절감이 핵심 경쟁요인임.

이에 미국·EU·일본·대만 등 주요 선진국은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WTO TC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함으로써 자국의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협정이 아닌 자국법을 개정하여 관세를 감면해 왔는데, 주요국과의 FTA 체결·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하였고, 2026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관세감면율을 축소하여 2030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항공기 부분품이 복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유통체계상 해외 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비율은 불과 20% 안팎에 그치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이 시작되고 종국적으로 폐지된다면 항공기 부분품의 수급가격 인상으로 국내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항공기의 제조·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2028년까지 관세를 면세하여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⑤ (생략)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table><tr><td>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td>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td>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td>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td>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tr><tr><td>100분의 100</td><td>100분의 80</td><td>100분의 60</td><td>100분의 40</td><td>100분의 20</td></tr></table>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